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8. 3. 6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2월 19일

나. 발 의 자 : 강북회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5차 행정위원회(2018. 3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강북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단체 및 개인 등 모범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,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모범·유공 납세자 선정 방법 등 (안 제3조)
- 모범·유공 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사항 (안 제4조)
- 선정 취소 및 사후 관리 등 (안 제5조~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 등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,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,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
- 안 제2조는 모범납세자, 유공납세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
- 안 제3조는 모범·유공 납세자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
- 안 제4는 모범·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관한 내용
- 안 제5조는 지원사항 취소에 대한 사항
- 안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-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은 2018.7.1로 규정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

국세청 「모범납세자 관리 규정」 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범납세자 관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, 납세의식 고취 등 모범·유공납세자가 귀감이 되어 우대 받는 문화가 조성되고,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
2018. 상반기 개정예정(주차문화과 회신).

4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재정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있으나, 우대 및 지원 대상자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나. 수정내용

- 안 제3조 제1항 중 “모범·유공납세자”를 “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”로 한다.
- 안 제3조 제2항 중 “모범·유공납세자에게는”을 “모범”을 삭제하여 “유공납세자에게는”으로 한다.
- 안 부칙 중 “2018.7.1.”을 “2018. 10. 1.”로 한다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50호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8. 3. 5.

제안자 : 마숙란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- 재정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있으나, 우대 및 지원 대상자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수정내용

- 안 제3조 제1항 중 “모범·유공납세자”를 “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”로 한다.
- 안 제3조 제2항 중 “모범·유공납세자에게는”을 “모범”을 삭제하여 “유공납세자에게는”으로 한다.
- 안 부칙 중 “2018.7.1.”을 “2018. 10. 1.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1항 중 “모범·유공납세자”를 “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”로 하고, 안 제3조 제2항 중 “모범·유공납세자에게는”을 “모범”을 삭제하여 “유공납세자에게는”으로 하고, 안 부칙 중 “2018.7.1.”을 “2018. 10. 1.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지방세"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.
2. "모범납세자"란 선정기준일(매년 1월 1일, 이하 같다)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, 연간 2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
3. "유공납세자"란 모범납세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,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 제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선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2조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납세자 중유공납세자(이하 "모범·유공납세자"라 한다)를 선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우대 및 지원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
2.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
3.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
4.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
5.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제5조(선정 등의 취소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·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,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.

제6조(사후 관리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·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, 체납유무, 징수유예유무,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. 10. 1. 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

(강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50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8년 2월 19일

발 의 자: 강북희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단체 및 개인 등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,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 자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모범·유공납세자 선정 방법 등 (안 제3조)
- 다. 모범·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 사항 (안 제4조)
- 라. 선정 취소 및 사후 관리 등 (안 제5조~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모범납세자 관리규정(국세청 훈령)」,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(우대 사항 지원 등)
- 다.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지방세"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.
2. "모범납세자"란 선정기준일(매년 1월 1일, 이하 같다)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, 연간 2건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, 재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)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.
3. "유공납세자"란 모범납세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,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 제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선정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2조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·유공납세자(이하 "모범·유공납세자"라 한다)를 선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모범·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우대 및 지원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
2.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
3.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
4.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
5.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제5조(선정 등의 취소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·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,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.

제6조(사후 관리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·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, 체납유무, 징수유예유무,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.7.1. 부터 시행한다.